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2. 4 선고 2019가합4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B

변론 종결 2020. 11. 5.

판결 선고 2021. 2.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2021. 2. 4.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13. 피고가 시행·시공하는 부산 사하구 C 지상 오피스텔, 도시형주택 신축, 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3,75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하고, 총 투자금 중 계약금 750,000,000원은 2016. 12. 30.까지, 중도금 1,500,000,000원은 2017. 2. 15.까지, 잔금 1,500,000,000원은 2017. 5.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 2016. 9. 13. 55,000,000원, 100,000,000원, 2017. 1. 2. 100,000,000원, 2017. 1. 3. 95,000,000원, 2017. 1. 6. 100,000,000원, 2017. 1. 17. 100,000,000원, 2017. 1. 25. 100,000,000원, 2017. 2. 5. 100,000,000원, 2017. 6. 21. 80,000,000원, 합계 8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피고에게 나머지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8. 3. 경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 해제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중 750,000,000원은 몰취하고, 2018. 6. 11. 나머지 8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제하고 750,000,000원을 몰취하였으나, 피고는 위약금으로 375,000,000원만 몰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투자계약이 원고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중도금, 잔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해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가.항이 '투자계약금(20%): 750,000,000원', 제9조가 '본계약을 위반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위반시 손해배상금은 기지급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가 위반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손해배상금액에 같음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조항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부를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투자금의 20%인 750,000,000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다만,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고, 여기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위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투자계약이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은 총 투자금의 20%로서 통상의 거래관행상 손해배상예정액보다 다소 과다하고, 손해배상예정액을 특히 높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중도금, 잔금지급을 약 1년간 지체하다가 이 사건 투자계약이 해제되었는데, 피고가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 지연과 피고가 주장하는 이자 상당 손해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는 2018. 3.경 이 사건 투자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18. 6. 11.에서야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60,000,000원을

반환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피고에 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계약금의 80%인 60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750,000,000원 중 위 인정된 손해액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15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 효 량, 판사 김해마루, 판사 정 예 지